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문 화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손 자 용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9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현실과 불부합한 도민대상 수상부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함께 하는 충북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한 추천 범위를 확대 운영하며,
- 시상과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상규정의 삭제로 공직선거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수상대상자의 자격을, 5년이상 도내 거주자 또는 직장근무자에서 타 시도 거주 충북출신인 자까지로 확대 (안 제2조)
- 도민대상 수상부문을 11개에서 4개 부문으로 축소 (안 제3조)
- 수상대상자 추천권자를 시장·군수에서 시장·군수 및 각급 기관·사회 단체의 장으로 확대 (안 제8조)
- 시상시기 조정 (안 제10조)

4. 검토의견

개정조례안은 현실과 불부합한 도민대상 수상부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함께 하는 충북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한 추천 범위를 확대 운영하며, 시상과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상규정의 삭제로 공직선거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 수상대상자의 자격을, 5년이상 도내 거주자 또는 직장근무자에서 타 시도 거주 충북출신인 자까지로 확대하며,
- 도민대상 수상부문을 11개에서 4개 부문으로 축소하고,
- 수상대상자 추천권자를 시장·군수에서 시장·군수 및 각급 기관·사회 단체의 장으로 확대하고,
- 시상시기를 조정하고 부상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수상대상자의 자격과 추천권자를 확대하고 시상시기를 조정하며 부상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

- 수상부문을 11개에서 4개 부문으로 축소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문별 공동수상을 허용하는 등 수상자를 늘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수상부문 명칭 중 너무 포괄적인 명칭은 지양하고 문학, 예술, 체

육 등 성격이 뚜렷한 부문에 대하여는 기존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삶의질 향상부문 → 문학·예술·체육부문

붙임 :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